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



- 일 시 : 2014년 7월 9일 (수)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 주 관 :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

대 회 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준봉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농업인과 농업 관련 종사자,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쌀은 예외적으로 특별 취급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증량해 왔습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올해 9월 말까지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의무면제(waiver) 협상을 통한 관세화 재유예와 고율관세 설정을 통한 시장개방 2가지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의무면제 협상을 통한 관세화 재유예는 협상시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 최근 2017년 6월 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한 필리핀의 경우 쌀 관세화를 유예받기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MMA)을 현재보다 2.3배

많은 80만5000t으로 늘리고,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국별쿼터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한농연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보고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고자 관세화 협상 이전에 '쌀 산업 종합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관세화 협상 시 고율관세 설정을 통해 수입쌀의 국내 시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쌀 관세화 관련 해외 사례 및 웨이버 사례 등을 통해 각국의 관세화 및 재유예 결정 배경과 과정, 정부의 쌀농가 피해 지원정책, 그 이후의 쌀산업 여건 및 정책 변화 등을 살펴보고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거센 시장개방의 물결 속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토론회 개요 5p

주제발표 1 :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
“쌀 관세화 관련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7p

주제발표 2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쌀 관세화 법리에 대한 이해” 25p

메 모 장 41p

농어민정책포럼②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

1. 배 경

- 쌀 관세화 관련 해외 사례 및 웨이버 사례 등을 통해 각국의 관세화 및 재유예 결정 배경과 과정, 정부의 쌀농가 피해 지원정책, 그 이후의 쌀산업 여건 및 정책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일시 : 2014년 7월 9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한농연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 주관 :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
- 제목 :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 토론회
- 토론자 구성

소속 및 직책	성명	비 고
GS&J인스티튜트 이사장	이정환	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	김태훈	주제발표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주제발표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형	토론자1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권용대	토론자2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박상희	토론자3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장경호	토론자4

※ 토론자는 섭외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쌀 관세화 관련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주제발표 1 》

▷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

쌀 관세와 관련 예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2014. 7.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목 차

- 1 일본의 사례
- 2 대만의 사례
- 3 필리핀의 사례
- 4 시사점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UR협상과 관세화 유예

- UR 협상에서 6년간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 인정('95~'00)
- 쌀 관세화유예 대가로 6년간 의무적으로 쌀 수입
 - '86~88년 국내소비량의 4%에서 시작 매년 0.8% 증량('00년 8%)
 - '95년 42만 6천 톤(현미) → '00년 85만 2천 톤
- 이행기간 종료 후 관세화할 경우 MMA 물량 유지
- 이행기간중 관세화하면 잔여기간의 MMA물량은 전환시점부터 매년 0.4%씩 증량되도록 협상 내용에 포함

2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조기관세화 전환의 배경

- UR 협상타결 이후 수년간 연속풍작과 MMA 물량으로 인한 재고 급증
 - '94~97년까지 4년 연속 풍작 → 재고급증
 - * 1998.10월 쌀 재고량: 380만톤(국내소비량의 약 40%, 적정재고량 150만톤)
 - 3년간('96~98) MMA 물량 154만 톤 수입
 - * 가공용 59만 톤, 주식용 8만 톤, 해외원조에 46만 톤 사용,
1998년 10월 시점에 42만톤 재고
- MMA 수입쌀의 처리 한계, MMA 수입량 증대에 큰 부담
- 또한,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MMA외 수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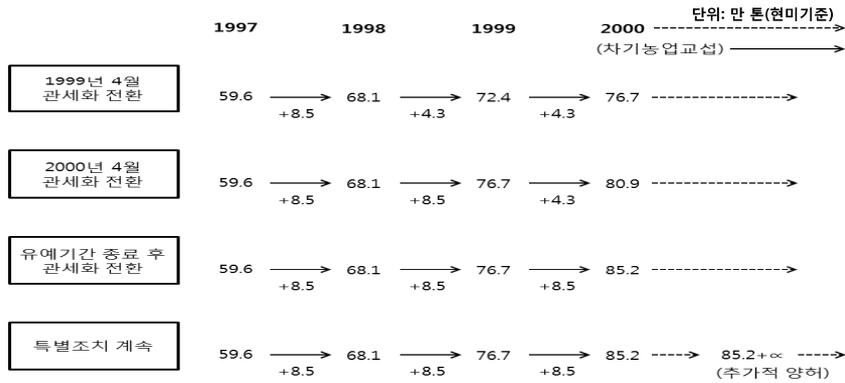
3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전환에 따른 사전적 분석결과

조기관세화시 MMA 물량은 연간 4만 3천 톤 만이 늘어나 국익에 도움

<일본의 쌀 관세화 유예/전환 시기에 따른 MMA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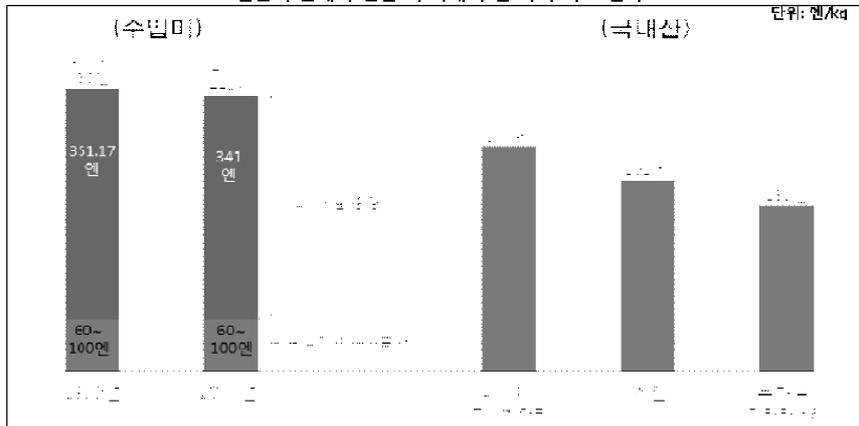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 「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전환에 따른 사전적 분석결과(계속)

<일본의 관세화 전환 시 국내외 쌀 가격 비교 결과>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1998. 12. 「米の特例措置の關稅措置への切換えについて」.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전환 과정

- **99년 4월 1일부터 조기관세화 실시**
 - 전국농협중앙회는 쌀 관세화 유예 조치에 관한 의견 수렴
 -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농림수산물 무역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집중 토의 시작
 - 내각총리대신을 중심으로 한 「WTO 농업협정 관계 각료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관세화 전환을 결정('98.12.18)
 - '98년 12월 21일, WTO 사무국에 통보
- **관세화 전환 통보 후 WTO 최종승인까지 긴 시간 소요**
 - 호주, EU,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4개국이 이의신청
 - 이들 국가들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관계법을(수입허가제→수입신고제등)개정 하고, 일방적으로 '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 실시
 - '01년 12월 15일 최종 승인

6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내용

- **기준년도 관세상당치: kg당 402엔**
 - 실적용 관세는 6년 동안 15% 삭감한 수준을 적용(선진국 적용)
 - 1999년 관세(종량세)는 kg당 351.2엔, 2000년 이후에는 341엔
- **의무수입량: 76만 7천 톤(현미기준)을 수입하여 정부에서 관리**
 - 기준년도 쌀 소비량의 7.2%를 의무적으로 수입
 - 국영무역제도 유지
 - 수입쌀 용도 한정: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 **매도시기에 대한 제한 없음**
- **일본은 종량세 선택**
 - 국제 쌀 가격과 환율이 상승할수록 증가세가 유리

7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외국산 쌀 수입과 판매)

- **의무수입쌀: 일반수입과 SBS(Simultaneous Buy and Sell)로 구분**
 - 일반수입은 가공용으로 한정되고 판매 후 남는 부분은 사료용, 원조용 등으로 사용
 - SBS로 수입되는 물량은 용도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밥쌀용으로도 판매
 - MA쌀 수입은 주로 미국과 태국으로부터 도입, 미국은 매년 36만 톤 유지
- **SBS 방식의 mark up은 약 50엔/kg, TRQ 외 수입관세 341엔/kg보다 크게 낮은 수준**
- **SBS방식으로 대략 10만 톤 수입, 13년은 국내산 가격이 저렴하고 수입산 가격이 높아 약 6만 톤만 수입**
 - 수입되지 못한 잔량은 일반수입으로 도입

8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외국산 쌀 수입과 판매)

- **현재 의무수입량 77만 톤: 주식용 약 10만 톤, 가공용 20~30만 톤, 사료용 30~40만 톤, 해외원조용 10~20만 톤 판매**
 - 국내산 쌀로 대응하기 힘든 저가 가공용(튀장, 소주, 떡 등)으로 연간 20~30만 톤의 고정수요 있음.
 - 식량원조규약에 의한 일본의 원조용 약속물량은 밀가루 30만 톤에 상당(쌀 환산 시 약 19만 톤)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쌀로 이루어 짐.

9



일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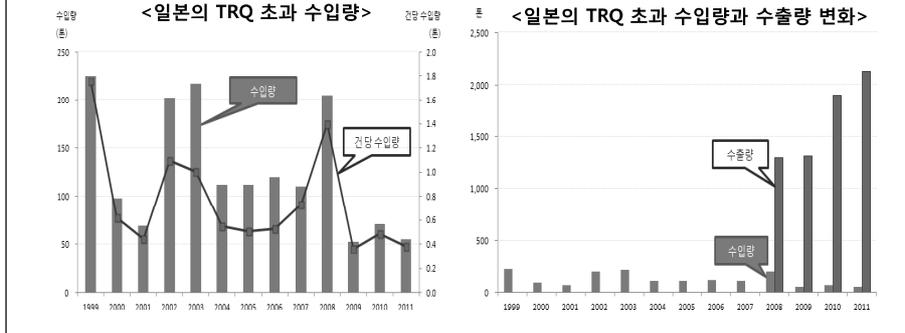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외국산 쌀 수입과 판매)

- TRQ 초과 쌀 수입량: 관세화 이후 연간 100톤 내외, '09년 이후 연간 50톤 내외
- SBS 경쟁에서 떨어진 경우 수입, 리조또용, 태국산 향미 등 특수용도 수입
- 국산쌀에 대한 소비자의 충성도는 여전히 강한 편
- 수입량이 줄어드는 반면 '08년 이후 수출량은 소폭 증가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정책 변화 등)

- **관세화와 상관없이 쌀 소비, 생산 지속적 감소세**
 - '12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7.8kg으로 감소, 면적은 '13년 164만 ha
 - 최근 재배면적 유지: 주식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재배 시작
 - * '13년 주식용 면적 152만 ha, 가공용 3.7만ha, 사료용 등 신규 수요미 5.4만 ha, 비축미 3.3만 ha를 재배
 - * 가공용, 가료용 쌀 재배 증가에 지원금 지급
- **일본의 조기관세화 직후에는 관세화 관련 별도의 대책은 없었음**
 - 관세화시 의무수입량의 추가수입가능성이 크지 않아 쌀 정책의 큰 변화 없었음.
- **관세화 전후 도작경영안정제(1998), 도작 소득기반 확보 대책(2004),호별 소득보상제도(2011) 등은 쌀 가격하락과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관세화와 직접적인 상관없이 도입됨**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유예 내용

- '02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에 대해 1년간 관세화를 유예
 - '02년 내 관세화 전환 또는 관세화 유예 연장을 결정하기로 합의
 - '02년에 MMA 방식으로 기준년도('90~'92년) 소비량의 8%인 14만 4,720톤 (현미 기준)을 수입(선진국 적용)
 - MMA 물량 중 65%는 정부에서 수입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수입
 - 관세율은 쌀에 대해 0%, 쌀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10~25%를 적용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전환의 배경

- 관세화 유예 지속시 의무수입량 추가증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
 - 일본의 관세화 사례와 같이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WTO 가입 이전 쌀 공급과 소비 모두 감소 추세, 수급은 초과 공급 상태, 생산조정제 실시 중이었음
 - '02년 WTO에 가입에 따른 MMA물량이 도입되면서 쌀 초과공급물량 증가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전환 과정

- **WTO 사무국에 '03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로 전환 통보('02.9.30)**
 - 양허표 초안의 형식에 문제점 발견 → 양허표 수정 → 공식적인 쌀 관세화 양허표 제출일은 '02년 10월 16일
- **통보 후 미국, 호주, 태국은 높은 관세상당치에 문제제기**
 - 오랜 기간 양자협상을 거쳐 '07년 7월4일 WTO가 대만의 양허표를 최종 승인
 - 주요 쟁점은 대만의 높은 관세상당치 계산에 대한 이의제기 때문이며, 최종 양허표에 국별 쿼터를 추가함으로써 합의 도달

14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내용

- **관세상당치(TE)는 53NT\$/kg으로 종가세로 환산시 663% 수준**
 - 적용된 기준년도는 '86~'88년 대신에 '90~'92년으로 이는 '대만의 가입을 위한 실무작성반 보고서' 의 175항에서 양허한 바를 따른 것
 - 2003년 적용 관세는 기준 관세상당치에서 15%(최소감축률) 감축한 45NT\$/kg(종가세로 환산시 563%)
 - 2003년 TRQ는 2002년과 같은 144,720톤(소비량 8%)으로 이중 65%는 국영무역, 35%는 공매방식(민간무역)으로 수입
- **사료용, 원조용 사용금지**
- **매도시기 제한: 적절한 시기에 매도**
- **MMA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제도를 포함한 기존의 제도 유지**

15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외국산 쌀 수입과 판매)

- TRQ외 수입되는 물량은 연간 500톤 정도 수입되는 것으로 추정(대만 농업 위원회)되며 연간 변동 폭이 큼.
- SBS 물량과 TRQ 물량 중 민간쿼터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TRQ 초과 수입량이 얼마인지 구분이 어려움
- 무역통계자료는 국별로 수입량만 집계하고 있음
- 수입은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에서 주로 수입되며 이집트에서도 부정기적으로 수입됨

16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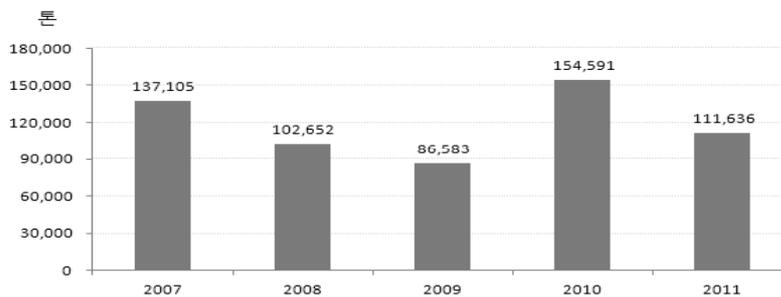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외국산 쌀 수입과 판매)

- 최근 대만의 연도별 쌀 수입실적은 '10년을 제외하면, MMA 물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대만의 연도별 쌀 수입량>



자료: 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http://www.customs.gov.tw/statisticsweben/>).

17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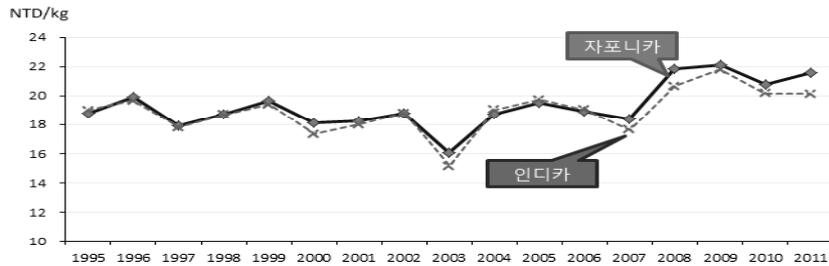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수급 및 가격에 대한 영향)

- 관세화 후 벼 가격 일시적 하락(16%): '02년 18.5NTD/kg→'03년 15.5
- '03년산 작황호조와 유통업자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재고량 방출
- '04년 벼 가격은 '02년 수준 회복
- TRQ 초과한 수입물량이 미미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대만의 벼가격 추이>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2011 Agricultural Statistical Yearbook.

18

일본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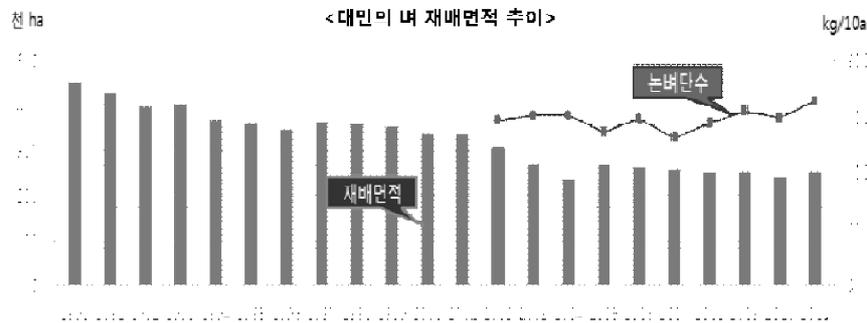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수급 및 가격에 대한 영향)

- 벼 재배면적: 관세화 이전 면적 감소 추세와 비슷
- 관세화 전환 후 '04년 23만 7천 ha로 감소하였으나, '05년 27만 ha로 회복 및 유지
- '11년 논벼 단수는 655kg/10a으로 '02년 이후 연평균 1.2% 증가



자료: 대만 농업위원회, 2011 Agricultural Statistical Yearbook.

19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이후 쌀 산업 변화(정책변화)

■ 관세화 후 일시적 가격하락에 대응한 정책 도입

- '쌀 농가 현금구조(現金救助)' 조치를 발동: '03년 10월 중순에는 산지 쌀값이 기준 가격(현미기준 kg당 15.2NT\$) 밑으로 하락하자 대만 정부는 기준가격과의 차액분을 쌀 재배농가에 현금으로 지불

■ '여량(餘糧) 구매제' 실시 ('03)

- 20억 NT\$를 들여 kg당 16.6NT\$에 2기작 쌀 12만 톤(현미 기준)을 매입
- 여량 구매제와 더불어 쌀 휴경보조금 단가 인상('03)

■ 농산물 수입피해 구제기금 확대('03)

- '03년 1월 30일 대만 정부는 향후 3년간 농산물 수입 피해 구제기금의 규모를 1,000억 NT\$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법제화

20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유예 내용

■ '93년 UR협상: 쌀에 대해 10년간('95.7~'05.6) 관세화 유예(개도국 조건)

- MMA는 국내 소비량의 1→4%(6만 톤 → 24만 톤), 쿼터내 세율은 50%로 설정

■ '04년 쌀 관세화 협상: 7년간('05.06~'12.06) 재유예

- DDA 협상조기 타결을 예상하여 7년간만 추가연장
- MMA는 35만 톤으로 46%증량, 쿼터내 세율 40%로 인하
- 13만 8천 톤(40%)을 국별 쿼터 배분(태국 98천 톤, 중국 25천 톤, 호주 15천 톤)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현황>

	기간	MMA		세율
		수량	기간	
특별대우(1차)	10년('95~'05)	119,460톤	1995.07/1999	50%
		238,940톤	2000/2005.06	
특별대우(2차)	7년('05~'12)	350,000톤	2005.07~2012.06	40%

21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 추진

- '11년 11월 WTO농업위원회에 5년 간 관세화 유예 재연장 의사 통보
 - 'WTO 농업협정상 특별대우(관세화 유예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며 회원국들이 재연장 반대
-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 재연장 요청 배경
 - 필리핀은 쌀 자급을 실현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
 - 관세화가 되면 수입쌀 급증으로 농가의 소득과 식량안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치·경제적 불안을 포함한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의무면제 추진 과정

- 쌀 관세화에 대한 의무면제(Waiver) 요청
 - '12년 3월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3조에 의한 의무면제 요청
 - '12년 6월 22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면제 협상 결렬 → 회원국과 추가 협상
 - '12년11월26일 개최된 상품무역이사회를 앞두고 쌀 관련 보상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미국, 호주, 캐나다와 쌀 이외 보상에 대한 합의 실패
 - '13년10월18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면제 요청 안건에 쌀 의무수입 물량, 쿼터 내 관세를 인하, 국별 쿼터 등 자국의 쌀 관련 양허안 제시 → 결렬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의무면제 추진

<필리핀의 쌀 관세화 추가 유예 관련 양허안>

구분	12.7.1~13.6.30	13.7.1~14.6.30	14.7.1~17.6.30	
물량(톤)	350,000	645,134	805,200	
관세율(%)	40	40	35	
국가별 쿼터(톤)	호주	15,000	15,000	15,000
	중국	25,000	40,000	50,000
	엘살바도르	-	4,000	4,000
	인도	-	40,000	50,000
	파키스탄	-	40,000	50,000
	베트남	-	228,067	293,100
	태국	98,000	-	-

24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의무면제에 의한 쌀 관세화 유예 5년 재연장

- '14년 6월 19일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쌀 관세화 의무 5년간 면제 승인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면제 관련 양허안>

의무수입물량	'12년 35만 톤 → '14~'17년 연간 80만 5천 톤
관세율	40% → 35%
국별쿼터	3개국 13만 8천 톤 → 7개국 75만 5천 톤 (5.5배 증가)
관세화 시점	2017년 7월
개별 국가와의 협상 안건	육류관세 인하 등(비공개)

25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전환국들의 의무수입량 초과 도입량 미미

- **일본과 대만 관세화 전환,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수입은 미미**
 - 일본의 관세화 전환 이후 의무수입량 초과 쌀 수입량은 연간 100톤 내외에서 2009년 이후 연간 50톤 내외로 감소
 - 대만은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의무수입량을 초과한 물량은 연간 500톤 정도 추정
- **일본과 대만의 경우 관세상당치가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크게 기여**
- **우리나라도 관세화로 전환 시 적정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 노력 필요**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일시적인 시장 충격에 대비 필요

- **대만의 경우, 관세화 전환 시에 일시적으로 시장 출하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 발생**
 - 우리나라도 '06년 밥쌀용 수입쌀 판매를 앞두고 '05년 가을 수확기 가격 급락 경험
 - * 2005년 쌀 생산은 4.6% 감소하였으나 수확기 가격은 13.5% 하락, 이듬해 회복
- **관세화 전환 시 일시적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전망 등의 정보제공과 함께 시장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

일본의 사례

대만의 사례

필리핀의 사례

시사점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의 대가 클 것

- 필리핀은 의무수입량을 포함하여 연간 100~200만 톤을 수입하고 있어 약 80만 톤까지 의무수입량을 증량하여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
 - 그러나, 쌀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MMA, 국별쿼터 증량 이외에 협상당사국의 관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이 큰 것으로 추정
- 우리나라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해 의무수입량을 늘릴 경우, 필리핀과 달리 국내 쌀 산업 피해는 심각할 것
 - 필리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무수입량 늘릴 경우, MMA가 94만 1천 톤(13년 생산의 22% 수준) 까지 늘어나 쌀 가격과 자급률 급락 불가피

28

감사합니다.



29

“쌀 관세화 법리에 대한 이해”

《 주제발표 2 》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쌀 관세화 범리에 대한 이해

2014. 7. 9.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1. 쌀 시장 관세화의 불가피성

모든 수입농산물에 관세를 매기고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것이 WTO의 원칙이다. 한국의 쌀은 예외로 인정받아 20년간 시장 개방 유예의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에 쌀 수출국들도 최소한의 시장 접근은 보장받아야 하므로 한국이 5%의 관세만 부과하고 수입해야 하는 의무수입량(MMA)은 연간 40만t으로 늘었다. 이제 유예기간이 2014년 말로 종료되기에 쌀 시장 관세화는 불가피하다.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MMA를 늘려주어 쌀 수출국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으니 지금 DDA에서 다른 WTO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 같이 현상 유지 권리를 행사하며 쌀 관세화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을 동결(standstill)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MMA를 늘려준 것은 한국 쌀에 대해 20년간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있게 해준 데 따른 수출국들의 기간 손실을 보상한 차원이다. 이제 유예기간이 소진되어 관세화해야 하는데 이걸 다시 미루면서 과거에 준 MMA 보상 이야기를 꺼내자는 말인가? 마치 돈을 빌려서 쓴 다음에 그동안 이자를 지불했으니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WTO 회원국들이 '현상 동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UR 이후 전개된 DDA 협상에서 잠정 합의한 사항들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함이다. 한국이 쌀시장을 2015년부터 개방해야 하는 것은 UR 협상의 결과 발생한 국제법적 의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DDA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과의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우리가 관세화를 진행하지 말자는 것은 기존 숙제를 다해놓고 추가 숙제에 대해 논의하는 친구들에게 기존 숙제도 하지 않은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궤변이다.

이대로 2015년이 도래하면 한국의 WTO 협정 위반 상태가 성립된다. 쌀 수출국들은 WTO 제소를 비롯한 각종 통상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 측이 패소할 것이 뻔하며 1년 반이면 WTO 패소 판정이 확정되고, 2~4개월 정도의 이행 기간이 부여될 것이다. 즉 2년 후엔 승소국들에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판정을 이행해야 하니 쌀 관세율, 수입쌀 관리방식 등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결정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대외신인도 타격 등 국익에 대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한다. 그래도 우리가 버티면 승소국들이 무역 보복을 가할 것이고, 쌀과 같은 주요 교역 가능 품목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보복액수가 부과될 것이다. 결국 국가 위신이 추락한 상태에서 무역 보복을 당하며,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WTO협정 위반과는 별도로, 우리가 쌀 수출국들과 맺고 있는 FTA(한-미, 한-인도, 한-ASEAN, 한-호주 FTA 등) 위반도 성립됨을 주의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 쌀이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인식이 아니다. 기존 FTA에서는 쌀이 “관세관련 의무”로부터 적용제외 되어 있음에 불과하여 수입금지 조치까지 제외하지는 못하고, “WTO협정에서 허용되는 수입금지 행위”만 FTA에서 인정됨을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2015년 이후 쌀 시장 미개방(수입금지)으로 인해 WTO협정 위반이 되면, 자동적으로 FTA위반도 성립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FTA패널 절차는 WTO패널에 비해 신속히(1년 이내) 진행되며, 무역보복도 여러 교역부문간 제한 없이 용이하게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쌀 수출국들이 FTA제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WTO 의무면제를 획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대안이다. 의무면제 신청의 대가는 MMA 물량의

대폭 증량이다. 필리핀도 쌀 관세화 연장을 위한 의무면제 신청 대가로 MMA 물량 증량을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미 넘쳐나는 MMA 물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를 또다시 증량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상식 있는 정부라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 상태에서 쌀 관세율을 책정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2. 쌀 관세화 유예 현상 유지 논리의 문제점

쌀 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현상유지 협상’을 제안해 볼 수 있는 근거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 자체에 있는데도 정부가 패배주의에 빠져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한다. 결국 WTO협정상 쌀 개방 추가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대론자들이 지목하는 현상유지 협상의 핵심근거는 농업협정 부속서 5의 제3항이다. 제3항은 “이행기간(1995~2001) 이후 특별대우의 계속에 관한 협상은…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른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 자체의 시간 범위 내에서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정 20조에 따른 협상이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을 말하므로, 위 조항은 결국 DDA 협상 타결을 관세화 단행의 조건으로 연결시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DDA가 진행 중에 있고 여러 선진국들이 그동안 DDA에서 잠정합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는 현상동결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우리도 최소한 현상동결을 위한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논리다.

설령 위 조항이 그렇게 확대 해석된다 치더라도 심각한 문제는 위 3항이 한국 쌀이 아니라 일본 쌀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개도국 지위로 쌀 관세화를 유예 받았기에 선진국에 적용되는 3항이 아니라 개도국 조항인 제8항이 적용된다. 8항은 “이행기간(1995~2004) 이후 특별대우의 계속에 관한 협상은 2004년 말 이전에 종결된다”고만 규정,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른 협상의 일부”라는 말이 빠져 있

다. 3항과 8항은 서로 선택적인 조항이라서, 8항에서 빠진 어구가 3항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8항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이것은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화 유예연장에 관한 협상을 후속 WTO 농업협상(DDA)과는 별도로 독립된 협상으로 진행하는데 WTO 회원국들이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즉, 현행 WTO 협정상 한국 쌀의 관세화 여부 문제를 DDA 협상과 결부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는 말이다. 사실 우리가 쌀 시장 개방을 한시적으로 유예받은 것은 1992년 종결된 UR 협상의 결과다. UR 협상의 결과물인 WTO 농업협정이 개도국인 한국에 대해 최초 10년간(1995~2004) 유예를 허용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2004년 말 이전에 협상을 타결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이것이 8항이다. 우리는 이미 이 조항을 활용해 DDA와는 별도로 2004년 말 수출국들과 협상을 벌여 2014년을 최종 유예기한으로 설정했다.

관세화 반대론자들은 “2015년부터 관세화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도 없으므로 추가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농업협정 부속서 5는 쌀에 대한 “10년간의 특별대우 기간이 종료되면, 관세화를 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제10항), 이는 그 전체적인 문맥상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어 총 20년의 특별대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당연히 관세화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10년 유예한 경우에는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보다 더 유예의 혜택을 받은 20년 유예의 경우는 관세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논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약문안의 해석원칙에 반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에 대해 적용되지도 않는 조항인 3항을 들먹이며 DDA 현상유지론을 가져다 붙이자는 것인가. 2004년 말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연장기한을 2015년 이후로 다시 설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제 WTO 농업협정상 2015년 이후로도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은 없다.

3. 필리핀 의무면제 신청 사례의 시사점

위와 같은 해석이 옳음은 최근 필리핀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애초 개도국 지위를 원용했던 필리핀은 최초 10년 이후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협상을 2004년 말 벌여 추가로 7년간(2005~2011) 유예연장을 허용받았다. 그러다가 2011년 말 재차 연장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가 쌀 수출국들로부터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에 의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하고 필리핀은 2004년 말에 이미 이를 사용했으므로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다. 그래서 필리핀은 더 이상 유예협상 개최를 주장하지 못하고 의무수입물량 대폭 증량(350천톤 -> 805천톤) 및 기타 양보안(국별쿼터 3개국 138천톤 -> 7개국 755천톤 제공, MMA관세율 40->35% 감축 등)을 스스로 제안하면서 WTO 의무면제를 신청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것은 **관세화 유예를 1차 연장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도 추가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이미 국제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음**을 의미한다.

< WTO협정상 쌀 관세화 유예국 현황 >

구 분		필리핀	한 국	일 본	대 만
특별대우	기간	10년('95~'04)	10년('95~'04)	6년('95~'00)	1년('02)
	MMA	60~239천톤	51~205천톤	379~758천톤	144천톤
	세율	50%	5%	0~25%	0~25%
관세화연장	기간	7년('05~'12)	10년('05~'14)	*99년 조기관세화로 MMA 682천톤	
	MMA	350천톤	225~409천톤		
	세율	40%	5%		
의무면제(waiver) 제안	기간	5년('12~'17)			
	MMA	350~805천톤			
	세율	35%			

이러한 커다란 양보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4.9.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의무면제 신청안이 또다시 부결되었고 그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의무

면제가 결국 승인된 것은 의무면제를 위한 WTO회원국의 동의 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매우 큼을 시사한다. 설령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의무면제안이 가결되어 일반이사회나 각료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의무 면제와 같은 이행기간과 관련된 이슈는 WTO회원국 3/4 다수결이 아니라 컨센서스로 결정되는바, WTO회원국중 하나라도 반대하게 되면 의무면제가 승인될 수 없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심지어 쌀 수출국이 아닌 WTO회원국의 다양한 요구도 일일이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필리핀은 쌀 수요가 국내생산보다 많아 자발적으로 MMA물량보다 많은 쌀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MMA물량을 늘려주는 것이 추가적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의무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를 재차 유예하기 위해 의무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필리핀과는 근본적으로 사정이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즉, MMA를 대폭 증량(최소한, 현재의 8%에서 12%이상으로 늘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임)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타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증대요구도 수용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의 MMA관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의무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방향이다. 또한, 요청국이 의무면제 심사의 전제조건인 “예외적 상황”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OECD국가이면서도 농산물에 대한 집중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쌀 산업에 대한 막대한 국내보조를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간의 유예기간 이후로 추가적으로 유예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최근의 WTO의무면제 사례와 비교 - 필리핀의 경우는 농산물 평균양허관세가 35%로서 WTO의 개도국 평균양허관세인 60%의 절반정도이며,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나 수출보조도 없음. 따라서 필리핀의 농업부문은 일반적으로 WTO에서 가장 개방적인 농산물교역체제의 하나라고 간주).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WTO회원국의 컨센서스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대국을 위해 주요 농산물 관세화 재유예를 위해 국제사회가 의무면제를 부여하는데 컨센서스를 형성해줄 것을 기

대하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 WTO의무면제 >

1. 근거조항 - WTO설립협정 제9.3조

9. 3. 예외적인 상황에서 각료회의는 이 협정이나 다자간무역협정이 회원국에게 지우는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각주4)에 의한다. (각주4) 과도기간이나 단계별 이행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로서 의무면제 요청회원국이 관련기간의 종료시까지 이행하지 못한 의무에 대한 면제 부여는 컨센서스에 의하여서만 결정된다.

2. 절 차

- 의무면제는 당사국의 면제요청이 있으면 90일 이내에 상품무역이사회에 상정하여 검토를 진행하며, 검토 종료 후 보고서를 WTO 각료회의나 일반이사회에 제출하여 90일 이내에 WTO회원국 3/4이상의 동의(쌀 관세화의무 면제 관련 의무면제결정은 WTO회원국의 컨센서스로 결정)로 가결되게 됨.
- 단, 일반이사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컨센서스가 도출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 해당여부, 면제의 제반조건 및 면제 종료일자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됨.
- 1년 이상 면제를 받는 경우는 면제 종료시까지 매년 각료회의(일반이사회)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연례검토를 토대로 면제를 연장,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음.

3. 최근의 WTO 의무면제 사례

- 2003년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다이아몬드원석에 대해 자유로운 무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여 수출입제한을 허용
- 공공보건 증진을 위해 특허약품을 싼값으로 개도국이나 LDC국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의무를 면제(서비스 협정 개정시까지)
- 2007년에 몽골은 국내불경기와 산업보호를 이유로 캐쉬미어 원사(raw cashmere)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기한을 5년 연장하는 웨이버를 승인 받음.
- 2012년 EU는 2010년 대규모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을 위해 파키스탄이 EU에 수출하는 일정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무면제를 획득
- 2011년 개도국들이 최빈개도국의 서비스나 서비스제공자들에게 특혜대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의무면제 부여

4. 인도의 DDA 공공비축 보조금 허용 사례와의 차이점

쌀 개방 반대론자들은 작년 말 발리 WTO각료회의에서 인도 주도로 “개도국이 지급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용 보조금에 대해 WTO회원국들이 분쟁제기를 자제토록 한 결정”이 채택되었음을 근거로 우리 정부도 기존 농업협정상의 의무인 쌀 관세화를 미루도록 하는 WTO 결정 채택을 요청하는 협상을 제의해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인도도 WTO위반 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았으니, 우리도 쌀 관세화 유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인도가 획득한 것은 개도국 식량안보 공공비축용 보조금에 대한 영구해법이 마련될 때까지의 일시적인 분쟁회피 혜택이며, 교역상대국에 산업피해가 가해지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WTO각료회의 결정은 인도가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개도국 그룹의 지지 속에 G33의 이름으로 요청하고 협상한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내보조금의 경우 많은 WTO회원국들이 WTO규정을 사실상 준수하지 않으면서 지불해오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며, 많은 개도국들(특히 인도의 경우)이 UR협상 당시 국내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국내보조금 지급 허용한도를 선진국에 비해 적게 할당받은 역사적 불공정성이 있었기에, 이를 다소나마 시정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발리각료회의 결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보조금이 아닌 시장접근 분야에서, 그것도 이미 20년간의 관세화유예 혜택을 입은 한국의 쌀만을 위해 국제사회가 현상유지를 위한 WTO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실로 비현실적이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비현실적 목표달성을 위해 협상을 제의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이미지만 실추될 뿐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쌀 시장개방 문제와 FTA(TPP, 한-중-일 FTA 등) 협상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오해

정부는 쌀을 개방해도 최소한 몇백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요즘처럼 국제쌀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산쌀의 시장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한다. 쌀 개방 반대론자들은 다자차원에서 쌀을 덜컥 관세화해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TPP, 한중FTA 등에서 우리정부가 수세에 몰려, 쌀마저 FTA 관세철폐 대상품목으로 포함시켜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 실로 FTA 상대국에 대해 우리 쌀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기에, 이러한 반대논리는 TPP협상 참여 반대논리로도 이어진다.

FTA협상에서 쌀을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는 WTO에서 쌀을 개방했는지 여부와는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다. WTO관세율이 없더라도 FTA협상국간에 합의하여 쌀 관세상당치를 계산하여, 이에 입각해 한국쌀에 대한 FTA 관세철폐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WTO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교역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지목되어 FTA협상의 중점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FTA의 목적은 WTO에 따른 시장개방 수준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개시된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쌀을 중점 협상대상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고, 우리는 미국이 미개방을 고집하는 연안 해운 분야의 특혜와의 맞교환형태로 쌀 품목을 FTA 관세의 무로부터 제외시켰다. 이것은 WTO에서 미개방된 분야라도 얼마든지 FTA협상의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그러므로 WTO쌀 시장 개방에 관한 정책결정은 FTA이슈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평가해 결정돼야 마땅하며, TPP가입 여부와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6. 결 론

유토피아를 좇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정치권 임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최선의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이다.

쌀 시장 현상유지론과 같은 유토피아적이며 우물 안 개구리식의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진행하기보다는 쌀 개방이 이뤄지는 시점이 2015년 1월1일임을 조속히 공식화해야 한다. 쌀 시장 관세화는 국제적으로 타당한 정책임은 물론이고 수입쌀의 의무수입 물량의 증가를 막음으로써 그만큼 국내 쌀값의 하락폭도 줄일 수 있다.

그래야 2015.1.1.부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합리적 정책수순을 밟아나갈 수 있고, 그에 따라 무엇이 글로벌 한국 미래 농정(農政)의 방향인지를 논의할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쌀의 수입관세율을 정해야 하고, 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가공품들(국수, 초콜릿 혼합물 등)의 관세율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이해 관계국과 협의를 거친 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고 쌀 관세화 이행계획을 검증받아야 한다. 쌀 산업 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여 새로운 관세화 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기본틀도 재정비해야 한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일본과 대만도 쌀 시장을 개방해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저품질 시장은 중국과 태국에 내어주더라도, 고부가 산업인 고급 쌀 시장에서 이미 한국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는 쌀 품질관리 강화와 비용절감으로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쌀 산업을 좀더 자본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는 종합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수출시장 개척 등 마케팅 전략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을 이제 반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국민은 물론 국회와 의사소통을 통해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아닐 수 없다.

< 첨부: WTO농업협정 주요 관련 조문 >

제 4 조 시장 접근

1. 양허표에 포함된 시장접근양허는 관세의 양허 및 감축과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시장접근 약속에 관련된다.
2. 회원국은 제5조와 부속서 5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구된 어떠한 종류의 조치(Re.1)도 유지 또는 이용하거나 동 조치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Remark 1) 이러한 조치는 1947년도 GATT의 규정으로부터의 국별의무 일탈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수량제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임의적인 수입허가, 국영무역을 통하여 유지되는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일반관세 이외의 유사한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단, 1994년도 GATT나 세계무역기구 부속서 1가의 국제수지규정 또는 다른 일반적, 비농업특정적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20 조 개혁과정의 계속

회원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이 계속적인 진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동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 전에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 가. 그날까지의 감축약속 이행경험
- 나. 감축약속이 세계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
- 다.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 목적 및 이 협정 전문에 언급된 그 밖의 목적 및 관심사항
- 라. 위에 언급된 장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

부속서 5 제4조제2항과 관련한 특별대우

제 1 절

1.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 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또는 관련 조제품("지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이하 "특별대우"라 한다)
 - 가. 지정 품목의 수입이 1986-1988년 기준기간("기준기간")중의 해당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것
 - 나. 기준기간 개시 이후 지정 품목에 대하여 수출보조금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것
 - 다. 동 1차 농산물에 효과적인 생산제한조치가 적용될 것
 - 라. 이러한 품목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와 같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반영하는 특별대우의 대상으로서 마라케쉬의정서에 부속된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ST-Annex 5"로 지정될 것, 그리고
 - 마.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지정품목과 관련한 최소접근 기회는 이행기간의 제1차년도에 초부터 지정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4%에 해당하며, 그 이후 잔여 이행기간 동안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8%씩 증가될 것
2. 이행기간 중 특정년도 초에 회원국은 아래 제6항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회원국은 동 시점에서 이미 유효한 최소접근 기회를 유지하며, 잔여 이행기간 동안 최소접근 기회를 매년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0.4%씩 증가시킨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이행기간 최종년도의 최소접근 기회 수준은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3. 이행기간의 종료이후, 제1항에 규정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비교역적 관심사항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 협정 제 20조에 규정된 협상의 일부로서 이행기간 그 자체의 시간범위내에서 종결된다.
4. 제3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로서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되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5. 이행기간 종료시 특별대우가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회원국은 제 6항의 규정을 이행한다. 이러한 경우, 이행기간 종료후 지정품목에 대한 최소접근 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8% 수준에서 동 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6. 지정품목과 관련하여 유지되는 일반관세 이외의 국경조치는 특별대우의 적용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유효하게 제4조제2항의 규정의 대상이 된다. 동 품목은 특별취급이 종료되는 연도 초부터 그리고 그 이후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되는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관세의 세율은 이행기간동안 매년 균등하게 최소 15% 감축이 시행되었을 경우 적용될 수준이 된다. 동 관세는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 2 절

7.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가호로부터 제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이행기간 제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제5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되며, 제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 나. 이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가 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6항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부여된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메 모 장

메 모 장
